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6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윤한홍 · 김소희
구자근 · 김대식 · 박충권
최보운 · 고동진 · 이종욱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는 선팅 농도를 규제하고 있음.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% 및 40%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.

그런데 최근 좌우 옆면 창유리에 짙은 선팅을 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많음. 이로 인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어린이 방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인명 피해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% 이상이 되도록 하고,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,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

(안 제53조제8항·제9항 및 제160조제1항제8호의2·제8호의3 신설 등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“자동차는”을 “자동차와 어린이통학버스는”으로 한다.

제53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보다 낮아 어린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 옆면 창유리에 현수막, 비닐 등을 부착하여 시야를 가려서는 아니 된다.

제160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53조제8항을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

8의3. 제53조제9항을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어린

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를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	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①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(可視光線)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요인(要人) 경호용, 구급용 및 장의용(葬儀用) <u>자동차는 제외한다.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자동차와 어린이통학버스는</u> -----.
4. ~ 13. (생략)	4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3조(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) ① ~ ⑦ (생략)	제53조(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⑧ <u>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</u>

<u><신 설></u> 제160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8.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9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<u>00분의 70 보다 낮아 어린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 옆면 창유리에 현수막, 비닐 등을 부착하여 시야를 가려서는 아니 된다.</u> 제160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8의2. 제53조제8항을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</u> <u>8의3. 제53조제9항을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</u> 9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